

『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1월 5일

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희 영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시설물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범위 규정
 - 소각시설, 매립시설, 재활용시설, 주민편익시설
- 시설의 운영방법은 시장이 필요한 조직을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운영토록 함
 - 민간위탁 시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함
 -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·심의 후 그 기간을 갱신토록 함
- 반입대상 폐기물은 구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함
-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로 생산하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토록 함
- 주변지역주민을 위하여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편익시설 위탁 운영 시 적자발생에 대한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폐기물의 처리시설 반입·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토록 개정하였음

라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, 제31조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2조, 제25조, 영 제24조, 영 제27조, 영 제35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,
-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업무를 규정하고 처리시설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,
-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 수송료의 부과·징수, 반입제한 규정을 두어 폐기물 처리 시설보호와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,
- 소각열 공급방법 및 주변지역 지원, 주민감시요원의 위촉, 주민 편의시설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,
-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부합 되게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